

	<h2 style="margin: 0;">원격수업 운영규칙</h2>		규정번호	3-3-13
			제정일자	2001.03.02.
	개정일자	2021.09.01.		
	개정번호	Ver .9 총페이지 4		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칙은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교수·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(이하 “원격수업”이라 한다.)의 운영방법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2조 (교육대상자의 정의)** 원격수업은 재학생 및 총장이 허락한 자가 수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3조 (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및 운영 승인)** ① 원격수업 교과목이란 중간·기말 고사 등 평가 활동을 제외한 교수·학습 활동의 10분의 7 이상이 원격수업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과목을 말한다. <개정 2020.09.01.> <개정 2021.09.01.>

② 원격수업 교과목을 운영하고자 하는 학과는 ‘학과 교육과정개발및편성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에게 신청해야 하며, ‘원격수업관리위원회’와 ‘교육과정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③ 대학 간 협약에 의해 타 대학에서 개설한 원격수업 교과목을 채택하여 운영하는 것은 협약서를 따른다. <신설 2021.09.01.>

**제3조의2 (원격수업 콘텐츠)** ① 원격수업 콘텐츠는 담당교수가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필요한 경우에는 ‘원격수업관리위원회’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 개발 및 외부 위탁 등의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외부 콘텐츠의 구매, 임대 등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9.01.>

② 사이버대학, 대학 간 학점교류 등의 외부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 운영은 각 관련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③ 외부 콘텐츠로 수업 시간 전체를 운영할 경우 ‘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위원회’의 평가를 거치고 ‘원격수업관리위원회’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④ 동양미래대학교 원격수업 강의를 위해 동양미래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콘텐츠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동양미래대학교에 있으며, 이에 대한 관리, 감독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**제4조 (수강신청 및 학점의 인정)**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전부 원격수업만으로 이수할 수는 없다. <개정 2021.09.01.>

**제5조 (강의계획서 작성 및 게시)** ① 강좌를 담당하는 교수는 반드시 수업 개요 및 주별 강의계획을 명시한 강의계획서를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② 강좌개설 시 교과분류는 인터넷강의로 입력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

③ 강좌 담당교수는 원격교육지원센터와 협의하여 수업 개시일 1주일 전까지 원격수업 교육 프로그램을 원격수업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 <개정 2021.09.01.>

**제6조 (강의평가)** 이 규칙에 의해 개설되는 모든 강좌에 대하여 학기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그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09.01.>

**제7조 (성적 평가방법)** 원격수업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“학업성적 처리지침” 제2조에 따른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8조 (수업관리)** ① 수업은 원칙적으로 원격수업시스템으로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별도의 실시간 화상회의, 대면출석, 또는 과제수행중심 방식의 수업을 병행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② 출석은 출석·결석 처리가 확인되는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③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수업 또는 출석수업의 경우에는 호명에 의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④ 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SNS 참여, 과제물 제출 등을 통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0.09.01.>

#### 제8조의2 (원격수업 질 관리)

① 동영상 등 콘텐츠 제공 방식에 의한 원격수업 1차시의 1학점 기준 인정 범위는 강의 영상 25분 이상을 제공하고 토론, 퀴즈, 과제 등의 학습시간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② 실시간 화상회의 방식에 의한 원격수업 1차시의 인정 범위는 대면수업시간에 대한 학칙을 준용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③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콘텐츠는 ‘학과 교육과정 개발 및 편성위원회’에서 콘텐츠의 유지 또는 수정 여부 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, 유지 시에는 ‘원격수업관리위원회’에서 이를 심의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**제9조 (수강 인원)** ① 원격수업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200명을 원칙으로 하며, 그 이상일 경우에는 분반할 수 있다. <신설 2021.09.01.>

② 필요한 경우 강좌별로 수강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10조 (시스템 이용 제한)** 안전한 사용과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시스템의 인증을 거쳐야만 원격수업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11조 (등록생 확인)** 원격수업 수강생은 필요시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11조의2 (개인정보보호)** 「개인정보보호법」과 동양미래대학교「개인정보보호규칙」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, 유출, 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**제12조 (원격교육운영지원)** ① 원격수업시스템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그 운영을 관리한다. <개정 2017.03.01.> <개정 2020.09.01.> <개정 2021.09.01.>

② 원격교육지원센터는 양질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교원들의 원격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한다. <신설 2020.09.01.> <개정 2021.09.01.>

**제13조 (원격수업관리위원회)** ① 원격수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질 관리를 위하여 원격수업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운영한다.

②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처장, 산학협력부처장, 기획부처장, 종합정보지원실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 <개정 2021.09.01.>

③ 총장은 학생 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위촉해야 하며, 필요시 위촉직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. <개정 2021.09.01.>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원격수업 관련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
2. 원격수업 관련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원격수업의 운영과 질 관리에 관한 사항
4. 기타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<신설 2020.09.01.>

**제14조 (규칙의 개정)** 이 규칙은 원격수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09.01.>

**제15조 (보칙)**

① 원격수업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동양미래대학교의 일반 교과목 개설 및 운영 기준을 준용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② 국가적 재난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,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진행한 원격수업 교과목의 운영은 예외로 한다. <신설 2021.09.01.>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1)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본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산업체 위탁생은 총 20학점 이내(3년제 28학점)에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학년도까지의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산업체 위탁생은 2년제는 총 20학점, 3년제는 총 28학점까지 원격수업 교과목으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.

②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5항 및 제8조는 2020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